

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참고사항



※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신고 의무화,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[시행령 개정안 제3조 (2020년 3월 13일 시행)], 규제지역(특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)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신고 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유의사항

- 당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대량 신고하여 계약자 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 바라며,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거짓 작성 또는 미제출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8조제2항,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, 거래신고필증이 미발급되고 추후 신고필증 미지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시고 '영종하늘도시 한신더휴 2차' 당첨자 서류접수 종료 후 정당계약일까지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아래 항목에 따라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계약자의 주택취득 자금조달 방식을 결정하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항목	상세항목	세부내용	
자기자금	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	
	주식·채권 매각대금	주식(채권)매도액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이에 준하는 자금
	증여·상속 등	가족 등 증여·상속	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
	현금 등 기타	보유 중인 현금	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인 현금
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	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이에 준하는 자금	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	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기존 보증(전세)금	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중전부동산 권리가액	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중전부동산 권리가액 등
이에 준하는 자금		부동산 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	
차입금등	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	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
		신용대출	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
		그 밖의 대출	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
	임대보증금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을 보유 여부에 √ 체크, 보유란에 √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)
	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	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회사지원금·사채	신규 임대차 계약	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	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	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		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
입주계획	본인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. 분가한 자녀 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)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
입주계획	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 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·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·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	현금 등 기타자금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

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항목별 작성 예시



※ 작성 예시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계약 시 기재할 예정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	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예금(적금 등) 원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·채권, 각종 유가증권 매각금 등 원	
		④ 증여·상속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아 조달하는 자금 원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①+②+③+④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 원	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:)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 소유 부동산(전세보증금 포함)의 처분대금 원	⑦ 소계 자기 자금 소계 원	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(대출 종류:)	주택담보 대출 금액 원 신용대출 금액 원 그 외 대출 원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 주택담보대출을 기재한 경우에만 체크		
		⑨ 임대보증금 취득할 주택의 임대차 승계 또는 신규 임차자금 원	⑩ 회사지원금·사채 금융기관 이외 법인,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금 원	
		⑪ 그 밖의 차입금 ⑧+⑨+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원	⑫ 소계	차입금 소계 원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
		⑬ 합계	※ [총 공급 금액] 자기자금 + 차입금,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함 원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총 공급 금액 원		
	⑮ 계약이체 금액	총 공급 금액 원	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원	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원		
	지급 사유 ()	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년 월)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날짜 기재 금지 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